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57
------------	----

제출년월일 : 1999년 1월 30일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제정이유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한 도시건설공사가 복잡 대형화 함에 따라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기 능 (안 제2조)

-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의 기술관련사항
- 교량등 주요공사의 설계, 시공등의 기술관련사항
- 토질, 구조등 안전검토가 필요한 분야
- 설계등 용역관련사항
- 새로운기술, 공법 등의 한계와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 입찰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자문 요청한 사항

나. 구 성 (안 제3조)

- 위원은 토목(구조, 토질, 시공, 하천, 도로, 수문 등), 교통, 건설안전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하여 17인 이내
-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다. 임 기 (안 제5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라. 위원회의 회의 (안 제6조)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마. 소위원회 (안 제7조)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 소위원회는 2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바. 의견청취등 (안 제9조)

- 위원회는 현장조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계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사. 결과보고 (안 10조)

- 간사는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아. 운영세칙 (안 13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7

나. 예산조치 : 2,000천원 ('99년 예산에 반영됨)

다. 합의사항 : 필요없음

라.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한 도시건설공사가 복잡 대형화 함에 따라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을린다.

1.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의 기술관련사항
2. 교량등 주요공사의 설계, 시공등의 기술관련사항
3. 토질, 구조등 안전검토가 필요한 분야
4. 설계등 용역관련사항
5. 새로운 기술, 풍법 등의 한계와 범위에 관한 사항
6.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등 입찰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토목(구조, 토질, 시공, 도로, 하천, 수문등), 교통, 건설안전 분야등의 전문가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종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관련분야 전문가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킬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2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할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소위원회에서 자문받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문방법) ① 위원회에 자문할때에는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계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10조(결과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토목과장이 되고 서기는 토목과 직원중
에서 간사가 지명한다.

제12조(수당) 자문이 통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하여 출장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조례공포와 동시에 서울특별시서초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은 폐지한다.